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1일 02시 22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과태료	3

## 과태료

2014.04.17 조회수 660 등록자 박종열

<b>관리번호</b>	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06
<b>담당부서</b>	건강증진과
<b>상위법령</b>	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
<b>조례</b>	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1조
<b>유형</b>	2호 - 행정질서벌(허가취소 등)
<b>등록사유</b>	보건위생
<b>법령공표일</b>	신설규제
<b>존속기한</b>	2012-03-09
<b>규제시행/폐지일</b>	2012-03-09
<b>규제목적</b>	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
<b>규제내용</b>	제11조(과태료)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, 이의신청,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<b>등록후변동결과</b>	○ 2012. 7. 1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

**목록**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04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2-0013

# Yeosu Web Contents

